

# 일본의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원법제

## I. 일본 중소기업과 지적재산권의 상황

## II. 심사청구비·특허비의 감액

1.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8조에 기초한 제도
2. 특정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신청 등

## III. 중소기업지원계획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시책

1. 중소기업 지원네트워크 강화사업
2. 특허 등 취득활용 지원사업
3. 지역중소기업 등 해외신청 지원사업

## IV. 특허청·INPIT에 의한 정보제공

1. 특허청에 의한 정보제공 등
2. INPIT에 의한 정보제공 등

## V. 조기심사·조기심리제도 등

1. 조기심사·심리 제도
2. 면접심사·면접심리 등

## VI. 맺음말

마쓰오 카즈히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특집]

2012년도 Global Legal Issue는 최근 사회적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생발전'에 관한 다양한 국가의 법제를 주제별로 다룰 계획입니다. '공생발전'은 '자본의 책임'과 '상생번영'이 중시되는 시장경제모델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 [연재순서]

- 고용관계에서의 평등확립을 위한 법제
- 노인복지 관련법제
-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보장을 위한 법제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법제
-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법제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 일본, 유럽연합

## I. 일본 중소기업<sup>1)</sup>과 지적재산권의 상황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1인당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고<sup>2)</sup> 중소기업에 의한 PCT<sup>3)</sup>신청건수 및 신청인수는 공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특히 해외에서의 특허신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sup>4)</sup>.

그런데 중소기업에 의한 PCT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일본 국내에서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의 신청건수는 감소추세에 있다(아래 [표1]참조).

[표1] 최근 중소기업에 의한 지재산권신청 건수

특허		실용신안	
2009년	34,667건	2009년	3,878건
2010년	33,615건	2010년	3,447건
2011년	31,068건	2011년	3,155건
의장		상표	
2009년	9,692건	2009년	47,656건
2010년	8,979건	2010년	48,497건
2011년	8,749건	2011년	44,773건

출처 : 특허청 “특허행정연차보고 2012년판” 55-57면.

위와 같은 추세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이나 인재,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제공,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재의 활용, 연구개발로부터 사업전개, 해외진출까지 일관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위와 같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

- 1) 이 글에서 중소기업이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中小企業基本法, 昭和三十八年七月二十日法律第五十四号)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의된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를 염두에 두고 있다.
- 2)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2009년도판, 제1장 제3절 3.을 참조. 중소기업백서는 아래 일본 중소기업청 웹사이트에서 열람가능(1963년판 - 최신판). <http://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index.html>
- 3) PCT신청은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에 기초한 국제특허신청임.
- 4) 일본 특허청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12년판”, 55면에 의하면 최근(2009년에서 2011년) 중소기업에 의한 PTC신청건수는 2,531건(2009년), 2,577건(2010년), 2,838건(2011년)이며, 2011년 및 2010년의 내국인신청에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인수비율은 각각 45.3%, 47.3%이다. 동 보고서는 아래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toushin/nenji/nenpou2012\\_index.htm](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toushin/nenji/nenpou2012_index.htm)

다. 특허신청 등에 관한 심사청구비·특허비를 감면해주는 지원시책과 중소기업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정보나 전문가에 의한 조언 등을 제공하는 지원시책이 있다.

아래에서 일본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위와 같은 지원시책을 소개한다.

## II. 심사청구비·특허비의 감액

연구개발에 애쓰는 중소기업이 특허를 취득·활용함에 있어서 심사청구비나 특허비를 반액으로 경감해주는 시책으로는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8조에 기초하는 것과 중소기업의“모노즈쿠리”<sup>5)</sup> 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는 것이 있다.

각 시책의 개요는 아래 (1) 내지 (2)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은데 1) 특허 심사청구비의 50% 경감 및 2) 특허비(1년째부터 10년째까지)의 50% 경감은 공통적인 지원 내용이다.

### 1.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8조에 기초한 제도

산업기술력강화법<sup>6)</sup> 제18조 제1항 및 제2항<sup>7)</sup>에 의하면 특허청장관은 특허법상 특허비를 납부할 자 내지 자신의 특허신청에 대하여 신청심사의 청구를 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강화를 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에는 특허비 내지 신청심사비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동조 각항, 특허비의 경우에는 납부의 유예도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위 정령<sup>8)</sup>이 동법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6조 제2호, 제

5) “모노즈쿠리”는 “물건 만들기”를 의미하는 일본어로서 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자세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모노즈쿠리”의 항목 참조).

6) 원문으로는 産業技術力強化法(平成十二年四月十九日法律第四十四号).

7)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8조의 법문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① 특허청장관은 특허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째부터 10년째까지의 각 년도의 특허비를 납부할 자가 산업기술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일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비를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관은 자신의 특허신청에 대하여 신청심사를 청구하는 자가 산업기술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일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법 제1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청심사의 청구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8) 산업기술력강화법시행령(産業技術力強化法施行令, 平成十二年4月19日政令第206号).

5호, 제6호에서 특허심사청구비나 특허비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 1) 매출액 대비 시험연구비 등의 비율이 3%를 넘는 중소기업이 하는 신청

산업기술강화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호<sup>9)</sup>에 의하면 업종마다 자본금의 금액 내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시험연구비 등의 비율을 기준으로 특허심사청구비, 특허비의 반액(50%)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특허심사청구비특허비의 반액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기준<sup>1)</sup>

	자본금	종업원수	시험연구비율 <sup>5)</sup>
일반기준	3억 엔≥	300명≥	>3%
도매업	1억 엔≥	—	>3%
소매업	5,000만 엔≥	300명≥	>3%
서비스업	5,000만 엔 <sup>2)</sup> ≥	100명 <sup>3)</sup> ≥	>3%
여관업	—	200명≥	>3%
고무제품 제조업	—	900명 <sup>4)</sup> ≥	>3%

- 1) 산업기술강화법시행령 제6조 제2호에 의함. 자본금 기준과 종업원 수 기준은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됨.
- 2) 자본금 기준에서의 서비스업에서는 소프트웨어업 및 정보처리서비스업을 제외.
- 3) 종업원수 기준에서의 서비스업에서는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여관업을 제외.
- 4) 종업원수 기준에서의 고무제품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와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을 제외.
- 5) 비율산정의 시기적 기준의 원칙은 신청서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의 사업연도임(자세히는 시행령 제6조 제2호를 참조).

### 9) 산업기술력강화법시행령 제6조 제2호는 아래와 같다.

제6조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서 규정하는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제1호 생략 )

- 2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3억 엔(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소프트웨어업 및 정보처리서비스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만 엔, 도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 엔) 이하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명(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명,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및 여관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명, 여관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명, 고무제품제조업(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와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900명) 이하의 회사(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특정회사"라고 한다.)로서 신청서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의 사업연도(신청서제출일이 전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전의 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등 비율이 100분의 3을 넘는 회사(신청서제출일에 설립일 이후 26일을 경과하지 않은 특정회사 중 시험연구비 등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회사에 대하여는 상근의 연구자가 2명 이상이고 당해 연구자의 수의 상근 임원 수 및 종업원 수의 합계에 대한 비율이 10분의1 이상인 회사)

( 제3호 내지 제6호 생략 )

## 2)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의 보조금 등 교부사업의 성과에 관한 신청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은 이른바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sup>10)</sup>에 기초한 제도나 사업계획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에 관한 특허신청에 대하여도 심사청구비나 특허비의 경감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상 보조금 등 교부사업의 성과에 관한 특허신청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는 중소기업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 의한 사업활동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며,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이 참가할 기회의 증대를 꾀하면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위탁비 등에서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고 그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SBIR특정보조금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마다 실효성이 있는 지출기회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SBIR특정보조금 중 중소기업을 위한 지출금액의 목표액을 정하고 있다. 또한 SBIR특정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중소기업 등이 SBIR특정보조금을 받고 연구개발을 실시하며 그 성과를 사업화함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다(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10항 참조<sup>11)</sup>).

위 지원시책 중 하나로서 심사청구비와 특허비의 반액면제 혜택이 있으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산업기술력강화법 시행령 제6조 제4호<sup>12)</sup>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당해 특허 또는 발명이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신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사업의 성과에 관한 것(당해 사업이 종료된 날에서 2년 이내에 신청된 것에 한함)일 경우에 당해 특정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이다.

10) 정식명칭은 중소기업의새로운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법률(中小企業の新たな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11年3月31日法律第18号))임.

11)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husho.meti.go.jp/faq/faq/faq07\\_sbir.htm](http://www.chusho.meti.go.jp/faq/faq/faq07_sbir.htm)

12) 산업기술력강화법시행령 제6조 제2호는 아래와 같다.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그 특허발명 또는 발명이 중소기업의새로운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법률(평성11년3월31일법률제18호) 제2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보조금등을 교부받은 신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사업의 관한 것(당해 사업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신청된 것에 한한다.)일 경우에 당해 특정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동조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중소기업자

(제5호 및 제6호 생략)

### 3) 승인경영혁신계획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신청 등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승인경영혁신계획(동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참조)<sup>13)</sup>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신청과 승인경영혁신계획에 기초하여 승계한 신청은 특허신청에 대하여는 그 심사청구비나 특허비의 반액이 면제된다(산업기술력강화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호).

### 4) 인정이분야연휴신사업분야개척계획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신청 등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인정이분야연휴신사업분야개척계획(동법 제2조 제8항, 제11조 참조)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신청 및 인정이분야연휴신사업분야개척계획에 기초하여 승계한 신청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비 및 특허비의 반액이 면제된다(산업기술력강화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호).

## 2. 특정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신청 등

중소기업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sup>14)</sup>에 의거하여 인정을 받은 “특정연구개발등계획”(동법 제4조, 제2조 제3항 참조)에 따라 실시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신청 및 특정연구개발등계획에 기초하여 승계한 신청에 대하여는 특허심사에 관한 심사청구비나 특허비가 반액 면제된다.

## Ⅲ. 중소기업지원계획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시책

경제산업대신은 해마다 중소기업의 경영자원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앙

13) 경영혁신지원 전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husho.meti.go.jp/keici/kakushin/index.html>

14) 中小企業のものづくり基盤技術の高度化に関する法律(昭和18年4月26日法律第33号).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up>15)</sup>가 실시하는 사업의 실시에 관한 “중소기업지원계획”을 책정한다(중소기업지원법 제3조)<sup>16)</sup>.

동 계획 중 중소기업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3가지를 뽑을 수 있다. 즉 (1) 중소기업 지원네트워크 강화사업, (2) 특허 등 취득 활용 지원사업, (3) 지역중소기업 등 해외신청 지원사업의 3가지 사업이다. 아래에서는 이들 지원사업의 개요를 소개한다.

## 1. 중소기업 지원네트워크 강화사업<sup>17)</sup>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고도의 전문적인 경영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지원의 전문가가 전문지식과 풍요로운 실적을 갖는 순회대응상담원이나 전문가가 과제해결을 지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전국을 9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을 관할 하는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있다. 지원네트워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지식 등을 갖는 여러 기관·개인,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나 세무사·회계사, 대학, 지역의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제산업국은 “중소기업지원 네트워크 어드바이저(adviser)”를 선정하고 각 어드바이저가 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관을 순회하면서 지원네트워크에 상담해오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담해주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한다. 또한, 상담 내용이나 경영과제에 따라서는 지원네트워크가 적절한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도 위와 같은 지원네트워크 사업의 대상이 된다.

## 2. 특허 등 취득활용 지원사업<sup>18)</sup>

15)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独立行政法人通則法, 平成11年7月16日法律第103号) 제2조 제1항 및 독립행정법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법(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法, 平成14年12月11日法律第147号)에 기초하여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이다.

16) 중소기업지원계획은 중소기업청의 아래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chusho.meti.go.jp/keici/kakushin/2012/0518ShienKeikaku.htm>

17) 동 사업은 중소기업지원계획 중 III. 2. (1) ㉠항.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경제산업부 관동경제산업국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kanto.meti.go.jp/seisaku/chusho/nw/index\\_nw.html](http://www.kanto.meti.go.jp/seisaku/chusho/nw/index_nw.html)

18) 동 사업은 중소기업지원계획 III. 2. (1) ㉡항.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특허청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chushou/chizai\\_mado.htm](http://www.jpo.go.jp/torikumi/chushou/chizai_mado.htm)

이 사업은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sup>19)</sup>에 설치된 “지적재산종합지원창구”에 상담 대응을 하는 인재를 배치하여 중소기업 등의 지적재산에 관한 고민이나 과제에 대하여 바로 그 곳에서 해결해주시기를 도모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내용으로서는 먼저 창구에 배치된 지원 담당자가 중소기업 등의 지적재산에 관한 고민이나 과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 지원이 있다. 이 지원에는 지적재산권제도의 설명이나 창구에 설치된 전자신청용 단말을 이용한 전자신청<sup>20)</sup> 등 절차적 면의 지원, 지적재산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의 소개·설명 등도 포함된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원 담당자와 공동하여 해결지원해주시기도 한다.

위와 같은 지원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적재산종합창구에서는 1) 창구지원 담당자로서 지적재산, 경영, 기술에 관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자를 배치하고, 2) 지원을 도와주는 지적재산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데이터베이스<sup>21)</sup>를 이용하며, 3)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나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연휴하고 있다.

### 3. 지역중소기업 등 해외신청 지원사업<sup>22)</sup>

이 사업은 도도부현(都道府県)중소기업등지원센터<sup>23)</sup>가 특허 등의 해외신청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신청에 관련된 비용(현지 대리인의 확보, 번역 등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지원시책이다. 특허청의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특허신청의 경우 150만 엔, 의장·상표신청의 경우 60만 엔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된다.

19) 이른바 도도부현(都道府県)이며, 한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넓은 지방자치단체임.

20) 특허청으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인터넷 신청 소프트”가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研修館)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연수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나중에 새로 다시 소개하겠다.

21) 지적재산 전문가에 관한 인재 데이터베이스로서 예를 들어 번리사네비(<http://www.benrishi-navi.com/>), 변호사 지재넷(<http://www.iplaw-net.com/>), 지역중소기업 등 지적재산 전략지원 데이터베이스(<https://chizai-jinzai-db.go.jp/>) 등이 있다.

22) 중소기업지원계획 III. 2. (4) ②. 동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특허청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po.go.jp/sesaku/shien\\_gaikokusyutugan.htm](http://www.jpo.go.jp/sesaku/shien_gaikokusyutugan.htm)

23) 중소기업지원사업의실시에관한기준을규정하는성령(中小企業支援事業の実施に関する基準を定める省令, 昭和38年10月19日通商産業省令第123号) 제2조 참조.



## [보충]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의 보호활용에 관한 지원

위에서 소개한 지원시책 외에도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활용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즉 i)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研修館, INPIT)의 “해외지적재산프로듀서” 제도, ii) 특허청에 의한 “외국산업재산권침해대책 등 지원사업”, iii)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의한 “중소기업지적재산권보호대책사업”을 소개한다.

### i) 해외지적재산프로듀서 제도

해외지적재산프로듀서는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研修館, INPIT(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sup>24)</sup>에 의한 지적재산 정보의 활용촉진 사업의 하나로써 국외에서 사업의 전개가 기대되는 유망 기술을 갖는 기업 등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지적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한다. 국외에서의 사업내용이나 진출하는 국가의 사업환경, 제도에 대응한 권리의 취득이나 관리·활용 등에 관한 조언도 한다.<sup>25)</sup>

### ii) 외국산업재산권침해대책 등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발명추진협회가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이며, 외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및 제도에 관한 상담을 접수하여 상담자의 관심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한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제공<sup>26)</sup>, 외국의 산업재산권제도나 인접법령·제도에 관한 도서·간행물을 수집한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고<sup>27)</sup>, 때때로 외국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현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외국산업재산권제도설명회)를 개최하며 당해 국가의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개요, 최신의 이슈 등을 소개

24)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은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獨立行政法人工業所有權情報·研修館法, 平成11年12月22日法律第201号)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이며, 공업소유권에 관한 상담업무와 정보유통업무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인의 개요에 대하여는 동 법인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inpit.go.jp/about/index.html>

25) 지적재산프로듀서에 대하여는 INPIT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inpit.go.jp/katsuyo/gippd/gippd00001.html>

26) 예를 들어 해외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니가이드”(http://iprsupport-jpo.go.jp/miniguide/miniguide.html), 주요국가들의 “신청비·신청서식”(http://iprsupport-jpo.go.jp/syutsugan/syutsugan.html), 제도의 개요나 권리침해 상담에 관한 Q&A(http://iprsupport-jpo.go.jp/cgi-bin/search.cgi) 등의 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27) 자료실에 대해서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iprsupport-jpo.go.jp/library/library.html>

하고 있다<sup>28)</sup>.

### iii) 중소기업지적재산권보호대책사업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자사가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신청에 의하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현지 조사기관 등에 대해서 모조품이나 이른바 해적관의 제조업자나 유통경로의 파악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해주면서 그에 드는 비용의 일부(총비용의 2/3 이내, 상한금액 300만 엔)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sup>29)</sup>

## IV. 특허청·INPIT에 의한 정보제공

위에서 소개한 지원 사업이나 제도 외에도 특허청이나 INPIT가 제공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 역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특허청 및 INPIT에 의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소개한다.

### 1. 특허청에 의한 정보제공 등

#### 1) 지적재산제도 설명회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제도에 관한 지식·경험에 따라 지적재산제도의 개요나 기초지식에 대한 설명하는 초보자용 설명회와 특허, 의장, 상표의 심사기준이나 심판제도의 운용, 해외신청의 절차 등 전문성이 높은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하는 실무자용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sup>30)</sup>

#### 2) 산업재산권 전문관에 의한 중소기업 등으로의 개별방문·무료파견

특허청의 직원이 산업재산권 전문관이 중소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산업재산권제

28) 외국지적재산권설명회에 대하여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iprsupport-jpo.go.jp/gyomu/gyomu.html>

29)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JETRO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etro.go.jp/services/ip\\_service/](http://www.jetro.go.jp/services/ip_service/)

30) 2012년도의 설명회에 대해서 특허청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ibento/ibento2/h24\\_chiteki\\_setumeikai.htm](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ibento/ibento2/h24_chiteki_setumeikai.htm)

도나 중소기업지원제도 등을 소개함과 함께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담, 특허청에 대한 요망 등을 청취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전문관은 중소기업이나 관련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세미나나 연수의 강사로 출장 나간다(산업재산권 전문관의 파견에 관한 교통비, 사례금 등의 비용은 일체 무료).<sup>31)</sup>

### 3) 특허신청기술 동향조사의 공개

특허청에서 에너지·환경 분야(녹색기술혁신 관련 기술), 의료·건강 분야(라이프 이너베이션 관련 기술)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도 시야에 넣고 특허신청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있다.<sup>32)</sup>

### 4) 특허전략 포털사이트

인터넷에 개설된 포털사이트로서 지적재산전략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사이트 URL은 아래와 같다.

[http://www.jpo.go.jp/sesaku/tokkyosenryaku\\_01.htm](http://www.jpo.go.jp/sesaku/tokkyosenryaku_01.htm)

## 2. INPIT에 의한 정보제공 등

### 1) 특허전자도서관(IPDL)의 설치

자도서관(IPDL, <http://www.inpit.go.jp/ipdl/index.html>)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공개정보나 신청의 심사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과정보 등 산업재산권정보를 문헌번호나 각종 분류기호,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 2) 개방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방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http://plidb.inpit.go.jp/PDDB/Service/PDDBServ->

31) 특허청의 지적재산 전문관의 파견에 대하여 특허청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chushou/chitekizaisan.htm>

32) 특허신청기술동향조사에 대해서 특허청의 아래 웹사이트에서 조사결과의 일부를 열람할 수 있다. <http://www.jpo.go.jp/shiryu/gidou-houkoku.htm> 모든 조사결과가 게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특허청 도서관 및 지적소유권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ice)는 기업, 대학, 공적 연구기관 등의 개방특허<sup>33)</sup>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등록·검색은 무료), 개방특허에 관한 “라이선스 정보(양도 포함)”와 “니즈 정보(도입희망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특허전자도서관(IPDL)과 링크되어 있어서 특허정보 등을 열람할 수도 있다.

### 3) 지적재산에 관한 연수

INPIT에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침해경고를 의사 체험함으로써 특허권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양성하는 연수나 지적재산권을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판단능력을 조성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sup>34)</sup>

### 4) 신청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

INPIT에서는 산업재산권의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도 하고 있다. 상담은 직접 방문, 전자메일,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sup>35)</sup>

## V. 조기심사·조기심리제도 등

특허청에 의한 특허행정서비스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기심사·심리의 제도나 면접심사·심리 등의 제도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이들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통상 신청에 비하여 더 신속히 심사 또는 심리를 받거나 직접 심사관을 만나서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1. 조기심사·심리 제도

특허 신청인이 중소기업이나 개인인 경우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와 “조

33) 여기서 개방특허라 함은 권리양도 또는 실시허락의 준비가 된 특허를 말한다.

34) INPIT에 의한 인재육성 연수에 대하여 INPIT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inpit.go.jp/jinzai/index.html>

35)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적 상담에 대하여 INPIT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faq.inpit.go.jp/EokpControl?&event=TE0008>

기심리에 관한 사정설명서”를 제출하여 통상적인 특허신청보다 더 빨리 심사 또는 심리를 받을 수 있다(무료).<sup>36)</sup>

또한, 현행 조기심사보다 한층 더 빠른 심사를 하는 “슈퍼조기심사제도”가 시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sup>37)</sup>

## 2. 면접심사·면접심리 등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심사관 또는 심판관과 직접 면접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며 심사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확실한 권리취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는 외에 전국 각지에 심사관이 출장하여 면접하는 출장면접조사(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지방면접심리(특허, 의장, 상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구두심리를 하는 순회심판(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텔레비전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텔레비전 면접심사(특허, 실용신안, 의장)가 있다.<sup>38)</sup>

## VI. 맺음말

이른바 거품경제의 붕괴를 계기로 일본경제는 장기적인 정체기에 들어가는 한편 이른바 글로벌경제가 세계를 석권하면서 일본 중소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해외기업과의 경쟁에 노출되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술적 변화가 빠르고 대기업에 의한 도전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기

36) 특허의 조기심사·심리에 대하여 아래 가이드라인을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v3souki/guideline.pdf](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v3souki/guideline.pdf) 또한, 의장, 상표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이용 요건 및 절차는 각각 다르다. 의장 및 상표의 신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 웹사이트를 참조. 의장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isyou\\_soukisinri.htm](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isyou_soukisinri.htm) 상표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hkouhou.htm](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hkouhou.htm)

37) 슈퍼조기심사의 시행(試行)에 대하여 특허청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upersoukisinsa.htm](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upersoukisinsa.htm)

38) 출장면접심사에 대하여 특허청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junkai.htm](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junkai.htm) 지방면접심리 및 순회심판에 대하여 특허청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ihou\\_mensetu.htm](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ihou_mensetu.htm) 텔레비전 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면접에 대하여 특허청의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elesys.htm](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elesys.htm)

술혁신·개발에 애쓰는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의 혁신·개발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그 기술을 적절히 보호·활용하기 위한 자금, 인재, 정보 등이 부족해서 반드시 자사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위 글에서 소개한 다양한 시책이 앞으로 일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